

## § 504 하의 비차별 조항 공지

### 규정 안내문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1973년 재활법 § 504 (§504)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오직 장애를 이유로 DOE 에서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 당하거나 소외 되거나 혜택을 거부 당하거나 차별 당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비밀보장 규정도 존중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 [A-710](#)에서는 § 504 에 정의된 장애가 있어 자격요건이 되는 DOE 학교 및 프로그램 재학생 및 DOE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람 등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DOE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830](#)에서는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DOE 대상 사업자, DOE 시설 이용자, 또는 DOE 와 기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DOE 의 반차별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 § 504 권리 또는 절차에 관한 문의:

학생 및 학부모님:

§ 504 Program Manager  
Office of School Health  
42-09 28<sup>th</sup> Street, CN#25  
Long Island City 11101  
(718) 310-2429  
[504Questions@schools.nyc.gov](mailto:504Questions@schools.nyc.gov)

외부 관련 단체: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646) 428-3900  
<http://www.ed.gov/>